

대한간학회-GSK 연구기금 규정

개정 2009. 03. 24.

개정 2011. 08. 17.

개정 2013. 10. 08.

개정 2014. 04. 15.

개정 2016. 02. 03.

제 1조 (명칭)

본 기금의 명칭은 대한간학회-GSK 연구기금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"The GlaxoSmithKline Research Fund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"라고 표기한다.

제 2조 (목적)

본 기금은 간담도 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, 본 규정의 목적은 대한간학회-GSK학술논문상(GlaxoSmithKline Research Award of the KASL)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제 3조 (지원범위)

- 1) 본 기금은 2016년도부터 매년 3명에게 대한간학회-GSK학술논문상을 지원한다.
- 2) 대한간학회-GSK학술논문상은 SCI 혹은 SCIE에 등재되어 있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간.담도에 관한 논문 중 3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1편당 1,000만원씩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에게 지원한다.
- 3) 3명의 우수논문 수상자 중 최소한 1명은 만 45세 미만의 젊은 연구자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연도에 적합한 만 45세 미만의 젊은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45세 이상 연구자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제 4조 (지원대상자의 자격)

대한간학회 정회원으로 동일한 논문으로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한다.

제 5조 (구비서류)

대한간학회-GSK학술논문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한 날까지 본 기금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) 신청서 및 평의원 추천서 (소정양식)
- 2) 이력서
- 3) 연구업적목록
- 4) 대상논문의 별책 또는 복사본 10부
- 5)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

제 6조 (운영위원회)

- 1) 대한간학회에 본 기금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

담당한다.

- 2)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간학회 이사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은 GSK임원이 맡는다.
- 3) 대한간학회의 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4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간학회 회칙상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.

제 7조 (심사위원회)

대한간학회-GSK학술논문상의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
- 1) 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한다. 대한간학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에서 8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 심사위원의 임기는 대한간학회 회칙상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.
- 2)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촉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8조 (GSK학술논문상 수상자 발표)

대한간학회-GSK학술논문상은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며 이 내용을 대한간학회지(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)에 게재한다.

제 9조 (수상자의 의무)

- 1) 대한간학회-GSK학술논문상 수상자는 2년 이내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대한간학회지(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)에 게재하여야 한다.
- 2)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위반하였거나 수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

부칙

- 1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를 정할 수 있다.
- 2) 본 규정은 대한간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.